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December 15, 2022

[국세청, 상호합의체결 현황 발표]

[국세청,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착수]

[정부,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완화 추진]

[신규발효 협정: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최신 세무예규판례]

국세청, 상호합의체결 현황 발표

국세청은 2018.3 월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금년 10 월까지 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절차(과세분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430 건을 해결하였다고 11.20 발표함.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2.10 월까지 상호합의 처리실적은 총 190 건이며 평균 처리기간은 37 개월임. 「과세분 상호합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임. 또한 국세청은 조세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으며 2018 년~2022 년 10 월 동안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처리실적은 240 건으로, 연평균 처리실적은 49.7 건임. 과세당국 간 합의된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결과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는 일정기간 양국 모두에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며 최근 5 년 납세자는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통해 평균 6 년 4 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발표함.

pwc 삼일회계법인

국세청, 역외탈세자 53 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11. 23. 외화자금을 빼돌리고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 혐의 조사대상자 53 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이번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 53 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1)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off-shoring), 국외용역 매출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 사용한 탈세혐의자; 2)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부당하게 무상제공한 탈세혐의자; 3) 코로나 19 특수로 얻은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하거나 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하여 조세를 회피한 일부 다국적기업. 이번 조사대상자의 특징은 단순히 역외거래의 은밀성에 기반한 기존 탈세수법과 달리, 사업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꾸며놓고 탈세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한 사례들이라고 밝힘.

정부, 부동산 보유세 2020 년 수준으로 완화 추진

정부는 국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 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및「2023 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 개선방안에 다르면 2023 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20 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함.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022 년 대비 2023 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예정임. 정부는 주택보유세 완화를 위해 지난 6 월「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 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 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음. 아울러 정부는 지난 7 월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2023 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 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함.

신규발효 협정: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캄보디아,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이 12. 1. 발효되고,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내년 1.1. 발효 예정이라고 밝힘. 한-캄보디아 FTA 와 한-인도네시아 CEPA 가 발효되면, 기 발효한 싱가포르.베트남과의 양자 FTA, 한-아세안 FTA, RCEP 과 더불어, 아세안지역의 FTA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코로나 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는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음. 한-이스라엘 FTA 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이스라엘과 체결한 FTA 로서, 높은 수준의 시장 자유화*를 통해 시장접근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관세철폐율(%) : (품목수 기준) 韓 95.2, 이 95.1,

(수입액 기준) 韓 99.9, 이 100). 또한 교역·투자 확대는 물론, 반도체·전자·통신 등 첨단장비 수입선 다변화, 벤처·스타트업 포함 양국 기업 간 첨단기술 협력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음.

최신 세무예규판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의한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시 유예기간 적용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에서는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 기업의 내부적 요인에 의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규정(조특령 §2 ②)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중기령 §3 ① 2호・별표1・별표 2, 이하 "중기령")의 개정이라는 기업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조특령 §2 ⑤).

이번 심판례의 쟁점은 중기령 개정 전 사업연도(2014년)에 중소기업이었던 청구법인이 중기령이 개정된 사업연도(2015년)에 개정된 중기령의 중소기업 요건과 개정 전의 중기령에 의한 중소기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기령 개정에 의한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이에 대해 이번 심판례는 중기령 개정에 의한 유예기간 규정은 중기령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중기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서면-2020-법인-5279, 2021. 2. 2,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9, 2021. 8. 18.), 개정 전 중기령에 의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구법인은 중기령의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중기령 개정에 의한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함. (*조심2022중6459, 2022. 11. 2.*)

즉, 이번 심판례는 중기령 개정 전에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중기령 개정 전의 중소기업 요건을 여전히 충족하면서 개정된 중기령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중기령 개정이라는 불가피한 요인이 없었다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유예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결정으로 이해됨.

따라서, 중기령 개정에 의한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개정 전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개정된 중기령에 의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을 가지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중기령 개정에 의한 유예기간 규정은 개정된 중기령이 시행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개정된 중기령이 시행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서면-2018-법령해석법인-3921, 2019. 12. 9.*).

적격간주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사후관리 사유 위배시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은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으로서 법인세법상 적격합병(법법 §44 ②) 또는 적격간주합병(법법 §44 ③)에 따라 양수한 사업용 재산을 2024년말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되,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상 사후관리 사유(법법 §44의 3 ③ 각 호, 이하 "사후관리 사유")를 위배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특법 §57의 2 ① 및 지특령 §28의 2 ①). 한편, 법인세법은 적격합병 또는 적격간주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사후관리 사유를 위배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중단하되, 적격간주합병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후관리를 위배하더라도 과세특례 중단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법법 §44의 3 ①, ③).

참고로, 적격간주합병이란 적격합병 요건(법법 §44 ②)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는 완전모자법인간 합병 또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간 합병을 말함(법법 §44 ③).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법인세법상 과세특례 중단대상이 아닌 적격간주합병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 합병법인이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사후관리 사유를 위배한 경우 지특법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임.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인세법상 과세특례가 중단되지 않는 적격간주합병이라 하더라도 사후관리 사유를 위배하는 경우에는 지특법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 이는 지특법에서 법인세법과 달리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합병의 유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지특법상 추징사유도 법인세법상 사후관리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44조의 3 제3항 전체가 아닌 같은 항 각 호의 사후관리 사유만을 인용하고 있음을 고려한 해석으로 판단됨. (*법제처22-0398, 2022. 11. 9.*)

따라서, 적격간주합병에 따른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후관리 사유(법법 §44의 3 ③ 각 호)를 위배한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는 적격합병에 대한 과세특례의 중단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특법상으로는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와 조세심판원도 유사한 입장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특례제도과-697, 2021. 3. 23., 조심2017지0241, 2017. 5. 17.*)..

Contacts

국제조세

이중현 709-0598
alex.lee@pwc.com

이상도 709-0288
sang-do.lee@pwc.com

이동복 709-4768
dongbok.lee@pwc.com

정종만 709-4767
chong-man.chung@pwc.com

차일규 3781-3173
il-gyu.cha@pwc.com

신현창 709-7904
hyun-chang.shin@pwc.com

노영석 709-0877
yongsuk.noh@pwc.com

조창호 3781-3264
changho.jo@pwc.com

오남교 709-4754
nam-gyo.oh@pwc.com

서백영 709-0905
baek-young.seo@pwc.com

류성무 709-4761
seongmoo.ryu@pwc.com

김영옥 709-7902
young-ok.kim@pwc.com

이응전 3781-2309
eung-jeon.lee@pwc.com

박종우 3781-0181
jongwoo.tice.park@pwc.com

로버트브로웰 709-8896
robert.browell@pwc.com

Tax Managed Services

심수아 3781-3113
sooa.shim@pwc.com

글로벌 인력관리 및 세무자문(People and Organisation)

박주희 3781-2387
ju-hee_1.park@pwc.com

내국세

오연관 709-0342
yeon-gwan.oh@pwc.com

이영신 709-4756
young-sin.lee@pwc.com

정복석 709-0914
boksuk.jung@pwc.com

나승도 709-4068
seungdo.na@pwc.com

남형석 709-0382
hyungsuk.nam@pwc.com

조성욱 709-8184
sung-wook.fs1.cho@pwc.com

정선흥 709-0937
sun-heung.jung@pwc.com

김광수 709-4055
kwang.soo.kim@pwc.com

신윤섭 709-0906
yoon-sup.shin@pwc.com

선병오 3781-9002
byung-oh.sun@pwc.com

장현준 709-4004
hyeonjun.jang@pwc.com

최유철 3781-9202
yu-chul.choi@pwc.com

허윤제 709-0686
yun-je.heo@pwc.com

성창석 3781-9011
chang-seok.sung@pwc.com

서연정 3781-9957
youn-jung.seo@pwc.com

이용 3781-9025
yong.lee@pwc.com

오혜정 3781-9347
haejung.oh@pwc.com

진병국 709-4077
byungkuk.jin@pwc.com

홍창기 3781-9489
chang-ki.hong@pwc.com

금융세무

정훈 709-3383
hoon.gp6.jung@pwc.com

박태진 709-8833
taejin.park@pwc.com

박수연 709-4088
soo-yun.park@pwc.com

M&A 세무

정민수 709-0638
minsoo.jung@pwc.com

박기운 3781-9187
ki-un.park@pwc.com

사모펀드에 대한 M&A 세무자문

탁정수 3781-1481
jeongsoo.tak@pwc.com

김경호 709-7975
gyungho1.kim@pwc.com

이종형 709-8185
jonghyung.lee@pwc.com

상속증여 & 주식변동

김운규 3781-9304
woon-kyu.kim@pwc.com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pwc.com

지방세

조영재 709-0932
young-jae.cho@pwc.com

양인병 3781-3265
in-byoung.yang@pwc.com

비영리법인 지원센터

변영선 3781-9684
youngsun.pyun@pwc.com

이전가격 & 국제통상

헨리 안 3781-2594
henry.an@pwc.com

전원엽 3781-2599
won-yeob.chon@pwc.com

조정환 709-8895
junghwan.cho@pwc.com

김영주 709-4098
young-joo.kim@pwc.com

김찬규 709-6415
chan-kyu.kim@pwc.com

소주현…709-8248
so.juhyun@pwc.com

해외투자 세무자문

김주덕 709-0707
michael.kim@pwc.com

이동열 3781-9812
dong-youl.lee@pwc.com

김홍현 709-3320
hong-hyeon.kim@pwc.com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지원

김성영 709-4752
sung-young.kim@pwc.com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센터

김봉균 3781-9975
bong-kyoon.kim@pwc.com

Knowledge & Innovation

조한철 3781-2577
han-chul.cho@pwc.com

정재훈 709-0296
jae-hoon_3.jung@pwc.com

삼일인포마인

이희태 3489-3001
heui-tae.lee@pwc.com

pwc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 2022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